

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(2023년도 기준)

○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구 분	금액(원)	구 분	금액(원)
30분 이상	16,190	150분 이상	46,970
60분 이상	23,480	180분 이상	52,880
90분 이상	31,650	210분 이상	58,930
120분 이상	40,280	240분 이상	65,000

○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
▶ 본인부담금

구분	일반 대상자	40% 감경대상자	60%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	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재가급여	15%	9%	6%	면제
시설급여	20%	12%	8%	
복지용구	15%	9%	6%	

▶ 재가급여(2023.01.01. 기준)

가. 월 한도액

등급	월 한도액	본인부담금		
		일반 대상자	40% 감경대상자	60%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
1등급	1,885,000 원	282,750 원	169,650 원	113,100 원
2등급	1,690,000 원	253,500 원	152,100 원	101,400 원
3등급	1,417,200 원	212,580 원	127,548 원	85,032 원
4등급	1,306,200 원	195,930 원	117,558 원	78,372 원
5등급	1,121,100 원	168,165 원	100,899 원	67,266 원
인지지원등급	624,600 원	93,690 원	56,214 원	37,476 원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

“(A)”+e큰사랑노인복지센터